

8. 구상금 청구

가. 서 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³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¹³⁵⁾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¹³⁶⁾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한편,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는바, 제3자가 상호 부담부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3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제3자의 변제는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¹³⁷⁾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¹³⁸⁾

13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13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13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13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7959 판결

13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나. 청구취지 기재례

☐ 구상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을 대위한 보험회사로부터 기왕의 치료비부담액을 제외한 일부금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면책된 전채무액을 기준으로 그의 과실비율 상당액으로 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당사자 갑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해당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인 을과 을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의약정내용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금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채무액전부가 보험회사의 출재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전채무액(치료비 부담액과 합의 당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을의 부담부분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으로 결정함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옳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 20477 판결)

☐ 구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0년)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여부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 구상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89,150원 및 그중 별지 제1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일란 기재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 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액 자체가 아니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취소된 금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 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공1997상, 1387)

㉠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9.부터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을은 공동면책된 위 금원 중 갑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9,300원 및 그중 2,925,41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2,440,260원에 대하여는 2010. 5. 29.부터, 나머지 3,630원에 대하여는 2010. 7. 24.부터 2011. 7.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상법 제724조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 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구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90,471,790원 및 이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2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3.부터, 51,471,7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 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서 보조참가를 한 경우, 상소심 이후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 가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있는 상소심 이후에 피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조참가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조참가를 하기 전의 심급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배○숙은 29,582,573원 및 그중 23,361,288원에 대하여, 피고 박○애, 박○미, 박○임, 박○영, 박○희는 각 19,721,715원 및 그중 15,574,192원에 대하여 각 2013. 8. 23.부터 2014. 1. 2.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②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 구상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한일근은 돈 29,197,012원 및 이 중 돈 9,557,604원에 대하여는 2010. 11. 2.부터, 돈 19,024,277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각 2014. 2. 29까지는 연 1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한영자는 돈 7,299,253원 및 이 중 돈 2,389,401원에 대하여는 2010. 11. 2.부터, 돈 4,756,069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각 2014. 2. 29.까지는 연 1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6,020원 및 그중 30,656,0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8.부터, 1,2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내용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 무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자가 그 자동차 소유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와 무단운전자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소유자는 무단운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

[참조판례]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가부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병 회사와 을 회사 및 갑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병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

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면책시킨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직접 구상권을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①의 경우, 병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을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병 회사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 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

위 ②의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 구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323,529,411원, 원고 이○○에게 176,470,58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2. 29.부터 2014. 12.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주체(=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던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그 권리 또는 순위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 권리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문자 그대로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임이 문언상 명백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청구에는 위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 조항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 구상금 청구(병합청구, 중첩관계, 매매계약취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1. 가. 원고에게,

(1) 피고 김○환은 30,793,146원 및 위 돈 중 30,705,616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2. 5.까지는 연 1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김○환, 김○식은 연대하여 29,169,236원 및 위 돈 중 29,046,356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3. 11. 12.까지는 연 1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김○식과 피고 문○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1. 4. 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문○복은 피고 김○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어 있고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데다가 채권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함으로써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인천지법 1997. 5. 7. 선고 96가합21016 판결)

☐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공2001상, 619)

☐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68,250,000원 및 그중 22,7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1.부터, 22,75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20.부터, 722,75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0.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8%, 다음 날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19%, 다음 날부터 같은 해 7. 31.까지는 연 1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일국, 김일권, 김일동, 김일호, 원영주는 연대하여 694,824,877원 및 그중 105,453,909원에 대하여는 2010. 6. 7.부터, 75,935,847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17.부터, 311,903,76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2.부터, 169,222,956원에 대하여는 2011. 5. 5.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8%, 다음 날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19%, 다음 날부터 같은 해 7. 31.까지는 연 1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김일순은 51,983,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2.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영발은 11,862,672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8.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 중 아래 나.항 기재 각 돈은 피고 배영호, 같은 배영자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고,

나. 피고 배영호, 배영자는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2,372,534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8.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박영발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보증보험계약에서 상환의무의 보증인은 대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증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까지 그 보험금 지급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을 촉구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법 1995. 2. 7. 선고 94가단3762 판결 : 확정)

㉡ 구상금등 청구(병합청구, 채권자취소,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등)

1. 피고와 소외 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879,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③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 구상금등 청구(병합청구, 채권자취소, 매매계약취소)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이○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②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공2001하, 1498)

☐ 구상금등 청구(병합청구,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 약속어음 발행취소)

1. 피고 ○○전기공업(주), 같은 갑일찬, 같은 서이억, 같은 박삼옥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14,677원 및 그중 52,301,477원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2008. 8. 31.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1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갑일찬이 발행한 수취인 피고 정일순,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중 위 54,714,677원 범위 내에서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 정일순은 원고에게 54,714,6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내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일한 재산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탁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정상절차를 통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데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시간인 2개월이 지나는 날보다 4개월이 앞선 경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부산지법 1999. 11. 2. 선고 99가합4965 판결 ; 확정)

☐ 구상금등 청구(병합청구, 증여계약 취소)

1. 피고 이○귀는 원고에게 33,009,729원과 그중 32,704,109원에 대하여 2008. 9. 4.부터 2008. 12. 31.까지 연 15%,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이 2008.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맺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3. 피고 서○명은 원고에게 33,009,7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위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일 때에 원칙적으로는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만 하지만, 위 사해행위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파악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던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의 부동산의 시가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시에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을 보존한다는 사해행위소송의 목적에 부합하고,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

☐ 구상금 청구

1.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유○환, 권○수, 권○학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5.부터 2007. 11. 14.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갑이 자동차부품상을 경영하는 을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을이 아닌 을의 동업자 병 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 갑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공2001상, 615)